

춘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19나5473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8992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19나547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정문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10. 13.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소115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287,5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문 정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및 부호도 표시 선내 ‘ㄱ’ 부분 189㎡의 수로관(이하 ‘이 사건 수로관’이라 한다)을 관리하면서 그 수로관으로부터 7m 거리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7. 31.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인 5,287,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로관 부지 외의 나머지 부동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수로관을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로부터 7m 거리 내에 있는 나머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로관 부지 외에 나머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로관 부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로관 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수로관 부지의 전 소유자인 C가 피고에게 위 수로관 부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용인하면서 위 수로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40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255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470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63055 판결 등 참조).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가능 여부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로관 부지의 전 소유자인 C는 1976. 12. 15.경 위 부지를 농지개량사업의 용지로 제공하면서 위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알고서 위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수로관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이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및 부호도 표시 선내 ‘ㄱ’ 부분 189㎡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2017. 11. 20. 강원 횡성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② C는 1970. 9.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2009. 4. 23.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위 분할 전 토지 및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③ 피고가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횡성농지개량조합은 1976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대에서 농지개량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6. 12. 15. C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42평을 57,780원에 매수하고, 1977. 1. 7.경 그 매매대금의 80%인 46,224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80%만 지급한 것은 사업이 완료된 후 측량을 하여 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을 확정된 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 ④ 횡성농지개량조합이 매수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42평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 513.6평에 해당하여 이 사건 수로관의 부지 면적인 약 57평(189㎡)은 물론 위 부지가 위치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면적(약 427평)보다 더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횡성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사업용지에 편입된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C는 1976. 12. 15. 횡성농지개량조합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이후 원고들에게 위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위 쟁점 토지나 이 사건 수로관의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⑥ 이 사건 수로관은 농업용수가 이동되는 구조물로서, 지상에 돌출되어 있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쟁점 토지를 매수한 이후 약 10년 간 피고에게 위 쟁점 토지 및 수로관의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두봉, 판사 신흥호, 판사 여현주

